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762 발의연월일: 2025. 3. 10.

발 의 자:윤준병·주철현·송옥주

이원택 • 조계원 • 박민규

정동영ㆍ허 영ㆍ신영대

민병덕 · 김태선 · 문대림

황명선 · 김유덕 의원

(14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은 전세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·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 기 위해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법률임.

그런데, 이 법률의 유효기간은 법의 시행 후 2년이 경과하는 날까지로, 2025년 6월부로 일부 조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효력을 상실할예정임. 그러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자는 24년 11월 938건, 동년 12월 910건이 추가 결정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와 구제 필요성은 현재도 지속되고 있음.

이에 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의 유효

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속되는 전세사기 피해를 계속 구제하려는 것임(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).

법률 제 호

##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중 "2년"을 "5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법률 제19425호 전세사기피해자		
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	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		
부칙	부칙		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시행 후	제2조(유효기간)		
<u>2년</u> 이 경과하는 날까지 효력	<u>5년</u>		
을 가진다.			